

학 칙

제정 1993. 3. 1. 개정 1993. 8.14.
개정 1994. 3. 1. 개정 1995. 3. 1.
개정 1995. 3.25. 개정 1995.10.13.
개정 1996. 3. 1. 개정 1996. 9. 1.
개정 1997. 3. 1. 개정 1998. 3. 1.
개정 1998. 5. 1. 개정 1999. 3. 1.
개정 2000. 5. 1. 개정 2001. 3. 1.
개정 2002. 3. 1. 개정 2003. 3. 1.
개정 2003.11. 1. 개정 2004. 3. 1.
개정 2005. 5. 1. 개정 2007.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0. 3. 1. 개정 2011. 3. 1.
개정 2011. 4. 1. 개정 2011. 9.21.
개정 2012. 4. 4. 개정 2013. 3. 1.
개정 2013. 6.12. 개정 2013.10. 2.
개정 2014. 3. 1. 개정 2014. 7.25.
개정 2014.12.19. 개정 2015. 3. 1.
개정 2015. 4.14. 개정 2015. 8.3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6. 7.
개정 2016.12.28. 개정 2017. 3.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세계 명문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세계화된 고급전문인력, 창조적인 실무형전문인력, 꿈을 찾고 도전하는 신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명칭) 본 대학교는 “대경대학교” 라 한다.

제 4 조 (위치) 본 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에 둔다.

<개정 2014.3.1.>

제 5 조 (설치 학부(과)의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제 6 조 (계약(협약)학과 등 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협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직제

제 7 조 (조직)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 8 조 (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과)에 소속 한다.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해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교직원의 임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10 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② 연극영화방송예술학부, 유아교육과, VMD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 언어재활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③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 4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④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2 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학기) ① 학기는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다만, 개강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에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5 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 5월 22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삭제)

제 5 장 입 학

제 17 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이내로 한다.

제 18 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9 조 (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20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 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

제 20 조의 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조 (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하여 납부연기, 분할 및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 25 조 (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 조 (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 70조 제 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자퇴 및 제적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 학부, 계열, 학과의 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으며, 학부, 계열, 학과가 통합 및 폐지된 경우 유사 학부, 계열,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④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되기 전 2년제 수업연한의 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된 경우 재입학자는 3년제 수업연한을 따른다.

제 6 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28 조 (전공배정) ① 삭제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따라서 2 이상의 전공, 2 이상의 학과, 2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공배정의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9 조 (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모집단위간 이동) 및 전공변경(모집단위 내의 전공변경)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학처장은 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용학과와 그 인원의 허용범위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 총장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한다.

③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의 전과는 허가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재입학자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불허한다.

⑥ 전과 및 전공변경한자는 전입 학부, 계열, 학과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 할 수 있다.

제 30 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군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8.>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분류한다.<개정 2016.12.28.>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학생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8.>

④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질병(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천재지변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

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⑥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1 조 (복학) ① 제30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당연복학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32 조 (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3 조 (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 34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 80-90%로 하고 전문교과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②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 선택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며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부(과)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로 한다.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과별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⑦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과목인 경우 교양교과로 운영하고, 수업연한에 따라 졸업기준교양학점의 1/2선까지 인정한다. 단, TOPIK 2급 소지자 입학생은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사항으로 정규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은 글로벌어학센터에서 비정규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34 조-2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본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학과의 교육목표를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개발 방법은 NCS 개발 분야를 위한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NCS개발 유보분야의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로 구분하며, 상세한 내용은 대학의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에 따로 정한다.

제 34 조-3 (NCS-적용 교과목 편성)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교과목은 NCS적용 및 NCS 미적용 교과목으로 편성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과목 중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 34 조-4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은 수업설계, 수업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내용은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34 조-5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별 직무능력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의 핵심내용은 전공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성취도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 34 조-6 (NCS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NCS기반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학 및 학과수준의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질 관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상세한 내용은 “NCS기반 교육과정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 35 조 (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1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세계명문직업대학을 지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재교육과 전직교육을 통한 계속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50조 2에 의하여 우리대학교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총장은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6 조 (학점이수)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단, 사회봉사활동학점 및 현장실습학점은 예외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4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③ 제3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7 조 (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1학년 전과정 이수자 40학점 이내, 2학년 전과정 이수자 80학점 이내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학에서 지정한 연수 및 자기개발프로그램 이수는 5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⑤ 병역법 제73조와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에 대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 할 수 있으며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 internship)과정,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외 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해외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와 창업도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정한다.

제 38 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강의개시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9:00 ~ 22: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 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1 조(집중수업) ①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2 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외국인 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 43 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44 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5 조(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46 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단,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직무능력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⑤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신설 2016.12.28.>

제 47 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 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8 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과목 성적이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60점)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95	4.5	C	74-70	2.0
A	94-90	4.0	D+	69-65	1.5
B+	89-85	3.5	D	64-60	1.0
B	84-80	3.0	F	59이하	0
C+	79-75	2.5	S / U		불계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연수, 자기개발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는 S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⑤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⑥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규정”을 따로 적용한다.<신설 2016.12.28.>

제 49 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단, 제 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활동 학점은 예외로 한다.)
3. 수강신청을 중복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성적

제 50 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 1.25 미만인자와 총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 51 조(졸업) 총장이 정하는 각 학(부)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서식 제 1호 및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1. 졸업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0학점(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과정은 1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8학점(3년제 과정은 12학점, 4년제 과정은 20학점) 이상, 전공교과는 56학점(3년제 과정은 84학점, 4년제 과정은 10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부(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4. 4년제 과정의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학과에서 정한 졸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제 51 조-2(졸업유예) ① 제51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졸업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라 정한다.

제 52 조(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자는 후기졸업 할 수 있다.

제 53 조(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서식 제 1호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4년제 과정 학과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53 조-2(복수학위) ① 국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삭제)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4 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 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수료학점 <개정 2016. 3. 1>

학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4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4학점 이상
2학년	8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3학년	-	120학점 이상	100학점 이상
4학년	-	-	136학점 이상

2. <삭제 2016. 3. 1>

3. <삭제 2016. 3. 1>

4. <삭제 2016. 3. 1>

제 55 조 (유급)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유급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평생교육

제 56 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중 본 대학에서 50 학점이상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위수여요건과 절차, 학점취득 등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7 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부(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8 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9 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③ 본 대학교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7>

④ 본 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서식 제4호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6. 6. 7>

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6. 7>

제 60 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의 취득기준학점 2분의 1(12학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 61 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합리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대경대학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2 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

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의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④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3 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4 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제 65 조(학생지도)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 66 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규율 및 상벌

제 67 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 68 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9 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0 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회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71 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납입금

제 72 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납입금 연기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2 조-1(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3 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4 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2017. 3. 1>

제 13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 76 조(구성)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처장 및 학부(과)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77 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

③ 교수회는 당해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78 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8 조-1(대학평의위원회)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9 조(제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산학협력단

제 80 조(산학협력단의 명칭) 대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81 조(이사 및 단장)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2 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 83 조(행정업무)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서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서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84 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 85 조(회계 및 감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총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15 장 학교기업

제 86 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대경양조

② 학교기업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디자인-102(외 13필지)에 설치한다.

③ 학교기업은 관련 학부(과)와 연계하여 탁주 제조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④ 학교기업 연계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경양조 : 호텔조리학부(와인커피바리스타과)

제 87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6.12.28.>

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8 조(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40%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혜택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 89 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90 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3. 1>

제 91 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92 조(심의 및 공포) ①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6.12.28.>

② (삭제)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 93 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은 대경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 디지털정보센터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디지털정보센터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12.28.>

1. 디지털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디지털정보센터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8.>

2. 디지털정보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8.>

3. 디지털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8.>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8.>

5.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28.>

제 94 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설기관은 대경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② 삭제

제 18 장 장애학생지원

제 95 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9 장 보 칙

제 96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 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제 97 조(대학 자체평가) 총장은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며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행전전산과, 염직디자인과, 보험세무과, 관광일어통역과 신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건축설계과, 환경조형과, 비서행정과, 의상디자인과 신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10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유아교육과, 환경계획과 신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컴퓨터그래픽과, 연극영화과 신설)

2.(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경전문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경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계열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계열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유아교육과, 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연극영화방송계열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 ②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 과목 되었거나 학기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3.(계열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 4.(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환경정보계열 제 1학년 복학대상자는 유사계열·학과에 복학하고 제 2학년은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디지털애니메이션과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 과목 되었거나 학기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3.(계열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부, 계열, 학과 및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 계열, 학과 및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부, 계열, 학과 및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부, 계열, 학과 및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8월까지(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는 2006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 4.(입학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학과구조조정에 의한 입학정원을 88명 감축으로 전체입학정원을 1,964명으로 한다. 단, 학부(과)별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입학정원 조정계획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 4.(학장 명칭 개정) 제 7조(조직) ②항, 제 8조(교직원) ②항, ③항, 제 9조 ①항, ②항, 제13조(학기) ①항, ②항 제15조(휴업일) ①항, ②항, 제16조(임시휴업), 제20조(입학전형) ①항, ②항,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②항, 제22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②항, 제23조(입학허가 및 등록), 제24조(입학취소) 2호, 4호, 제25조(산업체위탁교육) ①항, ③항, 제26조(편입학) ①항, ②항, 제28조(전공배정) ②항, 제29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항, ②항, ⑥항, 제30조(휴학) ①항, ④항, ⑤항, ⑥항, ⑦항, 제32조(자퇴) ①항, 제33조(제적) ①항 4호, 5호, 제34조(교육과정) ②항, 제35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항, ③항, 제35조-1(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5조-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6조(학점이수) ②항, ③항,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⑤항, ⑥항, ⑦항, 제38조(수강신청), 제39조(수업) ①항, ②항, ③항, 제40조(계절수업) ①항, ③항, 제41조(집중수업) ②항, 제44조(출석인정) ②항, 제46조(시험) ③항, 제47조(추가시험) ①항, ③항, 제48조(성적) ④항, 제50조(학사경고), 제51조(졸업), 제55조(유급), 제53조의 2(복수학위) ②항, 제56조(학점은행제) ②항, 제57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③항, 제58조(특별과정) ②항, 제59조(전공심화과정) ③항, 제60조(시간제 등록제) ④항, 제62조(학생의 의무) ③항,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제65조(학생지도), 제66조(간행물), 제68조(포상), 제69조(장학금) ①항, ③항, 제70조(징계) ①항, ②항, 제71조(성

회통 예방), 제72조(납입금) ③항, 제73조(납입금의 면제), 제76조(구성) ②항, 제77조(소집 및 심의) ①항, ③항, 5호, 제78조(교무위원회) ①항, ②항, 제79조(제위원회) ①항, ②항, 제81조(이사 및 단장) ②항, ⑤항, 제83조(행정업무) ②항, ③항, ⑤항, 제84조(운영위원회) ②항, 제85조(회계 및 감사) ②항, 제92조(심의 및 공포) ①항, 제93조(부속기관) ②항, 제94조(부설기관) ②항, 제96조(대학 자체평가)의 학장 명칭은 ‘총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3.(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3.(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4.(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학부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 3.(명칭변경)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명칭), 제4조(위치), 제5조(설치 학부(과)의 입학정원)①항, 제6조(계약(협약)학과 등 설치), 제8조(교직원)①항, 제10조(수업연한)①항, 제34조(교육과정)②항, 제35조-1(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①항, 제53조(학위수여), 제56조(학점은행제)①항, 제57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①항, ②항, 제58조(특별과정)①항, 제60조(시간제등록제)①항, 제61조(학생자치기구)①항, ②항, 제70조(징계)①항, 제78조-1(대학평의원회), 제80조(산학협력단명칭), 제85조(회계 및 감사)②항, 제86조(학교기업의 설치)①항, 제91조(의견제출 및 처리)①항, 제93조(부속기관)①항, 제94조(부설기관)①항의 대학 명칭은 '대학교'로 개정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부 및 학과 전공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계열·학과 전공이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열·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3.(명칭변경) 제1조(목적), 제2조(교육목표), 제3조(명칭), 제4조(위치), 제5조(설치 학부(과)의 입학정원)①항, 제6조(계약(협약)학과 등 설치), 제8조(교직원)①항, 제10조(수업연한)①항, 제34조(교육과정)②항, 제35조-1(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7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①항, 제53조(학위수여), 제56조(학점은행제)①항, 제57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①항, ②항, 제58조(특별과정)①항, 제60조(시간제등록제)①항, 제61조(학생자치기구)①항, ②항, 제70조(징계)①항, 제78조-1(대학평의원회), 제80조(산학협력단명칭), 제85조(회계 및 감사)②항, 제86조(학교기업의 설치)①항, 제91조(의견제출 및 처리)①항, 제93조(부속기관)①항, 제94조(부설기관)①항의 대학 명칭은 ‘대학교’로 개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간호과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3년제 간호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4년제 학생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단,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당해학년도 학생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7학년도 설치 학부 및 학과

수업년한	설치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비고
		주간	야간	계	
4년제	간호학과	89	-	89	
3년제	안경광학과	30	-	30	
	공연예술학부	200	-	200	
	유아교육과	64	-	64	
	VMD과	30	-	30	
	임상병리과	60	-	60	
2년제	호텔크루즈서비스학부	120	-	120	
	모델패션아트스쿨	155	-	155	
	병원의료행정과	30	-	30	
	경찰군사학부	147	-	147	
	뷰티아트스쿨	190	-	190	
	경호스포츠과학학부	150	-	150	
	신산업창조학부	201	-	201	
	사회복지과	35	-	35	
	푸드아트스쿨	195	-	195	
합계		1,696		1,696	

[별표 2]

학부(과) 및 전공별 학위명

학부(과)	전공	학위명	학부(과)	전공	학위명
간호학과		간호학사	경호스포츠과학학부	스포츠건강과학과	체육전문학사
푸드아트스쿨	호텔조리과	조리전문학사		국제태권도과	체육전문학사
	세계호텔제과제빵과	제과제빵전문학사		생활체육골프과	체육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조리전문학사		경호보안과	경호전문학사
	와인·커피바리스타과	와인커피전문학사	경찰군사학부	군사과	군사전문학사
				경찰행정과	행정전문학사
호텔조리마스타과	조리전문학사	호텔크루즈서비스학부	호텔관광과	관광전문학사	
뷰티아트스쿨	헤어디자인과		미학설계전문학사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관광전문학사
				항공승무원과	관광전문학사
메이크업과	미학설계전문학사	VMD과		디자인전문학사	
피부미용과	미학설계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분장예술과	미학설계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과	예술전문학사	모델패션아트스쿨	모델과	모델전문학사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예술전문학사		패션쇼핑몰과	전자상거래전문학사
	뮤지컬과	예술전문학사		패션스페셜리스트과	디자인전문학사
	실용음악과	실용음악전문학사		실용댄스과	실용댄스전문학사
신산업창조학부	동물조련이벤트과	동물관리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보건전문학사
	3D프린팅과	3D프린팅전문학사	안경광학과		보건전문학사
	드론과	드론전문학사	병원의료행정과		보건행정전문학사
	자동차딜러과	경영전문학사	언어재활과		언어치료전문학사

[별표 3] <신설 2016. 6. 7., 개정 2017. 3. 1.>

2017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학과

학과	입학정원			비고
	주간	야간	계	
경호스포츠과학학과	-	15	15	
호텔크루즈서비스학과	15	-	15	
모델패션아트학과	-	15	15	
뷰티아트학과	-	30	30	
유아교육학과	-	20	20	
푸드아트학과	-	35	35	
공연예술학과	30	-	30	
합계	45	115	160	

[별표 4] <신설 2016. 6. 7., 2017. 3. 1>

2017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전공별 학위명

학과	전공	학위명	전공명
경호스포츠과학학과		체육학사	체육학전공
호텔크루즈서비스학과		관광학사	관광호텔학전공
모델패션아트학과		예술학사	모델학전공
뷰티아트학과		뷰티예술학사	뷰티디자인학전공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전공
푸드아트학과	호텔외식조리경영전공	호텔조리학사	호텔조리전공
	세계호텔제과제빵전공		호텔제과제빵전공

[별지 제 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0 0 0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0 0 0

학위번호 : 대경-0000-0000

[별지 제 2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0 0 0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0 0 0

[별지 제 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0 0 0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0 0 0

학위번호 : 대경-0000-0000

제 호

학 위 증 서

0 0 0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0 0 0